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4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30.
3. 회부연월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전입신고·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주소변경사실 통보 등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의 근거를 현행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16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4(주민등록 관련 사실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관련 신고 및 변경, 발급 등에 관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종류,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u> <u>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u>	<u><삭제></u>

현행	개정안
<u>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6조의2는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물 또는 시설의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1)에서는 ②‘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제15조제6항), ③‘세대주 변경 사실’(제20조제3항), ④‘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제41조의2), ⑤‘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제47조제8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0조(정정신고 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구분	신청인	첨부서류
전입신고 사실	세대주·소유자·임대인	1.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 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소 변경·정정 사실	본인	-
세대주 변경 사실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본인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사실	본인	-

개정안은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분산되어 규정된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신청인을 ‘본인’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신청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입신고 사실 통보의 신청인을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본인’의 범위에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전입신고·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